

특정감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출연·출자금 예산편성 및 관리실태 -

2015. 10.

감 사 원

출연연구기관에서 매년 자체수입 중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예산을 편성하고 이에 대한 결산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예산집행지침 제2편-III-10. 출연금에 따르면 출연연구기관은 자체수입 초과 달성, 비용 절감 등 경영개선으로 결산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그 일부를 능률성과급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구 산업기술연구회¹⁾에서 매년 소관 출연연구기관에 통보한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양식”에 따르면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이자수입을 제외한 잡수입 등) 예산의 경우 직전 3년 결산 평균액을 감안하여 편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예산편성지침」 제2장-제5절 자체수입 편성에 따르면 자체수입 중 수탁사업 수입 예산은 직전 3년 결산액의 가중평균을, 이자수입 예산은 직전 연도 결산액을 적용하여 편성하고 기타수입 예산은 기관 특이소요 등을 감안하여 편성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출연연구기관에서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직전 3년 결산 평균액 등을 감안하여 적정 규모로 편성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예산을 과거 실적보다 축소 편성함으로써 결산잉여금이 추가로 발생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예산의 축소 편성에 따라 발생한 결산잉여금은 경영개선과 관련이 없으므로 이를 능률성과급 재원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1) 2014. 10. 31. 구 기초기술연구회와 구 산업기술연구회가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 통합됨

그런데 한국○○연구원에서 2012년에서 2014년 사이에 매년 이자수입 예산을 직전 3년 결산 평균액보다 적게는 816백만 원에서 많게는 1,083백만 원만큼 축소 편성하는 등 [별표 5]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예산편성 및 결산 명세”와 같이 6개 출연연구기관에서 최근 3년간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예산을 직전 3년 결산 평균액보다 계 49,748백만 원만큼 축소 편성하였다.

그 결과, 위 6개 출연연구기관에서 결산잉여금이 계 29,519백만 원²⁾만큼 과다 발생하였으며,³⁾ 과다 발생한 결산잉여금은 경영개선과 무관한데도 그중 6,475백만 원을 능률성과급 재원으로 사용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연구원장 등 6개 기관의 장⁴⁾은 앞으로 합리적 이유 없이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예산을 과거 실적보다 축소 편성하여 결산잉여금을 추가로 발생시키고, 추가로 발생한 결산잉여금을 능률성과급 재원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 및 결산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1-7)

퇴직급여충당금 예산편성 및 적립 부적정

기획재정부에서 매년 예산편성 세부지침 등에 따라 출연기관의 인건비 예산을

-
- 2) 6개 출연연구기관에서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예산을 직전 3년 결산 평균액보다 축소 편성한 금액은 49,748백만 원이나 [별표 5]와 같이 결산액이 직전 3년 결산 평균액보다 적은 경우가 있어 결산잉여금 과다 발생액과 차이가 있음
- 3)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우 결산잉여금이 다음 연도 세입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직원 능률성과급 또는 연구개발적립금 적립에 사용
- 4) 한국 ○○○ 연구원장, 한국 ○○○ 연구원장, ○○○ 연구소장, 한국 ○○○ 연구원장, ○○○ 대학 원장

편성하고, 출연기관에서 매년 예산집행지침 등에 따라 인건비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예산편성 세부지침 Ⅱ-4. 출연·보조기관 인건비 및 경상비에 따르면 출연기관의 인건비 예산에는 퇴직급여충당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예산집행지침 제2편-Ⅲ.-10. 출연금에 따르면 출연기관은 근속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한 퇴직금에 맞추어 매 분기별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적립해야 하고, 기관운영 출연금(인건비, 경상경비, 사업비)의 집행잔액은 기관 세입에 계상⁵⁾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출연기관에서 인건비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예산집행지침에 따른 기준보다 과다하게 퇴직급여충당금을 적립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고, 기획재정부에서 출연기관의 인건비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출연기관이 퇴직급여충당금을 기준보다 과다하게 적립한 경우 이를 감안하여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연구원에서 2014년 말 현재 퇴직급여충당금을 예산집행지침에 따른 기준보다 2,950백만 원 과다 적립하는 등 [별표 11] “퇴직급여충당금 과다적립 명세”와 같이 8개 출연기관에서 2014년 말 현재 퇴직급여충당금을 예산집행지침에 따른 기준보다 계 13,339백만 원 과다 적립하고 있었으며, 기획재정부에서는 2015년 6월 현재까지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 결과, 기준보다 과다 적립된 퇴직급여충당금만큼 출연금 예산이 과다 편성되어 예산운용의 효율성이 저해되고 있었다.

조치할 사항

○○연구원장 등 8개 기관의 장⁶⁾은 앞으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예산집행지침에

5) 필요시 이사회 승인을 거쳐 사용할 수 있으나 인건비의 경우 인건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6) 한국 원장, 연구원장, 한국 원장, 한국 연구원장, 한국 연구원장,

따른 기준보다 과다하게 적립하여 해당 재원이 기관 세입에 반영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 집행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표 5]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예산편성 및 결산 명세

(단위: 백만 원)

기관명	연도	예산구분	직전 3년 결산 평균액 (A)	예산액 (B)	과소 편성액 (A-B)	결산액 (C)	당초 결산잉여금 (D=C-B)	정당 결산잉여금 (E=C-A)	과다 결산잉여금 (D-E)	능률성과급 추가 지급액
ㄱㄱㄱ	2012	이자수입	1,583	500	1,083	1,844	1,344	261	1,083	672
	2013	이자수입	1,669	750	919	1,815	1,065	146	919	148
	2014	이자수입	1,716	900	816	1,235	335	-	335	120
	소 계		4,968	2,150	2,818	4,894	2,744	407	2,337	940
ㄴㄴㄴ	2012	이자수입	13,725	2,238	11,487	10,676	8,438	-	8,438	2,201
		기타수입	652	311	341	705	394	53	341	218
	2013	이자수입	11,930	1,756	10,174	7,044	5,288	-	5,288	785
	2014	이자수입	10,066	2,500	7,566	3,853	1,353	-	1,353	206
		기타수입	403	300	103	579	279	176	103	114
	소 계		36,776	7,105	29,671	22,857	15,752	229	15,523	3,524
ㄷㄷㄷ	2012	이자수입	4,702	2,050	2,652	6,130	4,080	1,428	2,652	563
	2013	이자수입	5,311	2,050	3,261	3,772	1,722	-	1,722	40
	2014	이자수입	5,068	1,450	3,618	2,934	1,484	-	1,484	154
	소 계		15,081	5,550	9,531	12,836	7,283	1,428	5,858	757
ㄹㄹㄹ	2012	이자수입	555	390	165	878	488	323	165	35
	2013	이자수입	608	390	218	630	240	22	218	11
	2014	이자수입	679	590	89	644	54	-	54	-
	소 계		1,842	1,370	472	2,152	782	345	437	46
ㅁㅁㅁ	2012	이자수입	2,213	500	1,713	1,899	1,399	-	1,399	203
	2013	이자수입	2,038	600	1,438	1,903	1,303	-	1,303	99
	2014	이자수입	2,056	900	1,156	1,364	464	-	464	-
	소 계		6,307	2,000	4,307	5,166	3,166	-	3,166	302
ㅂㅂㅂ	2012	기타수입	2,513	1,208	1,305	1,835	627	-	627	135
	2013	기타수입	2,129	1,208	921	2,056	848	-	828	328
	2014	기타수입	1,931	1,208	723	2,275	1,067	344	723	443
	소 계		6,573	3,624	2,949	6,166	2,542	344	2,198	906
6개 기관	총 계		71,547	21,799	49,748	54,071	32,269	2,753	29,519	6,475

주: 1. 결산액(C)이 직전 3년 결산 평균액(A)보다 적은 경우에는 결산잉여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직전 3년 결산 평균액(A)보다 큰 경우에는 결산액(C)에서 직전 3년 결산 평균액(A)을 차감한 금액이 정당 결산잉여금에 해당

2. 능률성과급 추가 지급액은 기관별로 해당연도 전체 결산잉여금 대비 능률성과급 지급 비율을 과다 결산잉여금에 곱하여 산정

자료: 감사대상기관 자료 재구성

[별표 11]

퇴직급여충당금 과다 적립 명세

(단위: 백만 원)

연번	기관명	예산집행지침상 기준 적립액(A)	2014년 말 현재 실제 적립액(B)	과다 적립액(B-A)
1	ㄱㄱㄱㄱㄱ	3,906	6,856	2,950
2	ㄴㄴㄴㄴㄴ	9,992	10,712	720
3	ㄷㄷㄷㄷㄷ	4,063	4,429	366
4	ㄹㄹㄹㄹㄹ	8,301	8,954	653
5	ㅁㅁㅁㅁㅁ	7,437	9,926	2,489
6	ㅂㅂㅂㅂㅂ	4,113	4,262	149
7	ㅅㅅㅅㅅㅅ	55,292	60,763	5,471
8	ㅇㅇㅇㅇㅇ	2,221	2,762	541
합 계		95,325	108,664	13,339

자료: 감사대상기관 자료 재구성